

##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정 2025년 12월 19일 조례 제2340호

**제1조(「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오산시(이하 “시””를 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오산시(이하 “시”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종합적”을 “종합적인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주사로”를 “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”를 “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8조 제1항 중 “위탁운영 할”을 “위탁하여 운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위탁운영 할”을 “센터를 위탁운영하는”으로, “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.)를”을 “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 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.)을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9조 제5호 중 “제10조의”를 “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장의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1항 중 “지원서비스”를 “지원 서비스”로 한다.

**제2조(「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, “설치로 인한”을 “설치하고, 이를”로 한다.

##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제2조제7호 중 “위탁한 공공단체,”를 “위탁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셋”을 “둘”로, “가정을”을 “가정으로,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공할 수 있는”을 “제공하는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를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”로 한다.

1. 전액 면제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

제13조제1항 중 “공공단체, 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